

사본.

**함양 백현권역(물나드리) 공동이용시설**

---

**관리운영 위 · 수탁 협약서(안)**

---

2021. 11.

**함양군수**

**물나드리 영농조합법인 대표**

# 백현권역[물나드리]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 시설물 목록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구 조	등기일자 (준공일)	재산 소유	
		토 지	건 물			토지	건물
물나드리 두레원	백전면 경백리 789번지	8,199	합 계 : 1,182 숙박동 : 1,096.1 판매장 : 86.1	철근콘크리트조	2014. 12. 8. (2014.7.3.)	함양군	함양군
케빈하우스	백전면 경백리 796-6번지	708	합 계 : 121.5 케빈하우스 : 3동	경량철골조	2014. 12. 8. (2014.12.2.)	함양군	함양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백전면 경백리 494-2번지외1	2,986.9	합 계 : 447 게이트볼장 : 414 휴게실 : 33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2014. 12. 8. (2014.8.19.)	함양군	함양군

위 「백현권역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효율적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함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백전물나드리 영농조합 법인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백현권역 주민·도시민들과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백현권역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기간)** ① 본 협약의 위·수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3년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이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방법)** ① “을”은 권역공동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을 준수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 운영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다.

③ “을”은 공유시설물(물품포함)의 훼손(분실)시 규격과 성능이 그 이상의 사양으로 보강·보충하는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전담자를 배치하여 책임 운영한다.

**제4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을”인 물나드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책정하여 함양군에 승인을 득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제5조(비용부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보험료, 상하수도사용료, 소규모유지보수, 전기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 제반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해 “갑”이 판단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도록 한다. 

1. 천재지변 등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한 복구비
2. 법령의 개정이나 “갑”의 필요에 의한 시설, 장비의 추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구 년수를 증가 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규모 개보수 공사 등

**제6조(기금)** 관리 운영비용(제5조 “을”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5개 마을권역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을”은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협약기간 동안에 대하여 “갑”소유의 시설물 및 장비(화재로 인하여 소실될 우려가 있는 물건 포함)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사업자의 손해보험 및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 증서를 협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 하도록 한다.

**제8조(수탁자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제9조(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한 위수탁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2. “갑”이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3.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을”이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 (“을”이 본 협약 조항을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시설물의 문제점 및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을”의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

**제10조(해약시 처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약된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 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을”은 “갑”이 위탁한 「백현권역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백현권역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 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법률) “갑”과 “을”은 본 협약 조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4조(효력발생 시기)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갑”은 「백현권역 공동이용시설」 일체를 “을”에게 인계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2021년 11월 일

위탁자(갑) 함 양 군 수 서 춘



수탁자(을) 백전 물나드리 영농조합법인 대표 정 원 배

